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8. 25.(목)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8. 25.(목)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책임자	과장 김성환 (02-2110-1420)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민아 (02-2110-1424)

##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

- 라디오 운영재원 별도 분리 신규주주 지분 3년간 처분 금지 등 조건 부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8월 25일(목) OBS경인TV(주)의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 허가하였다.

방통위는 ‘20년 3월 (주)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하여 방송이 중단된 이후 경기 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방통위는 ‘21년 10월 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 사업자로 OBS경인TV(주)를 선정하고, OBS경인TV(주)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OBS경인TV(주)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 및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조달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 하였다.

방통위는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청취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 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OBS경인FM방송국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끝.



(붙임)

## OBS경인FM방송국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구 분	내 용
허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OBS경인FM방송국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은 기존 DTV 방송과 분리해 라디오 방송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li>○ 신규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하지 말 것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li>○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li><li>○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할 것</li><li>○ 방송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 매뉴얼 작성 비치, 연 1회 이상 재난 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li><li>○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실적(미개최시 사유 포함)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할 것</li><li>○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다른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li><li>○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li><li>○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li><li>○ 국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li></ul>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취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불만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 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청취자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 후 시행할 것</li><li>○ 신규 라디오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수신환경을 점검하고, 난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li></ul>